

스마트 사회기반시스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2020. 12. 21. 제정
2022. 12. 14. 일부개정
2023. 8. 24. 일부개정
2024. 5. 7. 일부개정
2025. 5.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관리 운영 지침 제15조에 따라 KAIST 스마트 사회기반시스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BK21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① BK21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으로 하며 연구단장이 임명하는 참여교수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한다.
1. 연구단의 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의 예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선발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① 연구단장이 연구단의 참여교수 증원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참여교수 선정 및 기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으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2020년 4단계 사업 신청 시 참여교수 수 : 15명)
②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없을 경우 참여를 인정한다.

③ 건강상의 문제, 창업 등의 이유로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다.

제4조(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관리기준) ① 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석사 2년차, 박사 4년차, 석·박사통합과정 6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 또는 학생이 지원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자이어야 하며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나 임용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 최소 1년이어야 하며 과제개발, 연구수행, 연구결과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 범위에서 하며 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정액급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단, 연구단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사하여 선발한다.
2. 신입 참여교수의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최초 지원 시 1년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원내 규정을 따르되 예외사항은 연구단장이 결정한다.

제6조(국제화경비 운영)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발대상은 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석사 2년차, 박사 4년차, 석·박사 통합과정 6년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으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지급기준은 원내 ‘여비규정’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 지급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단, 연구단의 예산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여행지(등급)	체제비(월기준)
가	\$3,500
나	\$3,000
다	\$2,500
라	\$2,000
◦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 100%,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를 지급 ◦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 KAIST 여비 규정에 따름	

4.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③ 제1항에 따른 단기해외연수의 선발기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선발기준은 BK21 사업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학회 논문발표(구두 및 포스터 발표)의 경우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참가의 경우 연구단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단기해외연수 신청자는 신청서(별표1)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단기해외연수 참가자는 학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기간은 학회 개최기간과 학회참가를 위한 입출국기간(최대 2일)을 더하여 지원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출국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사유서를 구비하여 연구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항목은 항공료, 학회등록비, 체재비(국내운임 포함), 보험료로 구분한다.
5. 제4목의 항공료, 학회등록비, 보험료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구비하여 연구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장기해외연수의 선발기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선발기준은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선발하며,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을 우선 지원 한다.
가. 논문, 학회발표, 특허, 기타 수상내역 등을 반영하여 연구 실적이 높은 학생
나. 전 학기 학점 3.3 이상인자 또는 영어성적보유자(IBT TOEFL 83/ PBT TOEFL 560/ IELTS 6.5/ CBT TOEFL 220/ TOEIC 700/ TEPS 599 이상)로 하되, 박사과정생의 경우 입학 시 제출한 성적을 인정한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위(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 지원자는 영어성적 제출을 면제한다.
2. 장기해외연수 신청자는 신청서(별표3)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연구단에서는 선발

기준에 따라 연구단장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한다. 장기해외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표4)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수기간을 1년 이상 허용하나 지원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하로 한다.
 4. 연수기간 변경 시에는 기간변경 사유를 제출하여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기 지급한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5. 지원항목은 항공료, 교육훈련비, 체재비(국내운임 포함), 보험료로 구분한다.
 6. 제5목의 항공료, 교육훈련비, 보험료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구비하여 연구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한다.
- ⑤ 해외석학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참여교수가 해외석학 초빙을 원할 경우 연구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급기준은 원내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른다.

제7조(성과급 지급기준)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가는 당해 연도 12월 중에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대상 및 지급액은 연구단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급의 예산범위 내에서 S, A, B, C 등급으로 차등 지급 하며,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60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평가항목은 연구실적, 교육실적, 연구단 기여도로 하며 연구단 기여도 점수는 단장이 평가하여 총점에 반영한다. 단,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경우 사업기간이 6개월이므로 연구단 기여도로만 평가한다.
4. 연구단장에 대한 평가는 생략한다.
5. 평가항목별 배점은 연구단장의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연구실적(20점)	학과 연봉제 평가 항목 중 학술실적 평가를 원용한다. ※ 평가기간 : 전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
교육실적(20점)	당해연도 봄, 가을학기 지도학생 현황으로 평가하며 학기별 참여대학원생 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 1명 이상 ~ 4명 미만 : 5점 - 4명 이상 ~ 8명 미만 : 10점 - 8명 이상 ~ 12명 미만: 15점 - 12명 이상 : 20점
연구단 운영에 관한 기여도(60점)	운영회의 참석여부, 보고서 작성기여 여부, 실적자료 제출기한 준수 등 연구단 공헌도를 연구단장이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 급	점 수	금 액
S	90점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에 따라 1인당 연 최대 600만원 이내로 차등 지급
A	70점 이상~ 90점 미만	
B	50점 이상~ 70점 미만	
C	50점 미만	

- ② 행정직원의 성과급은 업무 실적에 따라 연구단장이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타 기여도 성과급은 연구보고서 작성, 사업관리,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구단 운영의 기여도에 따라 참여인력(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 ④ 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실적 중 우수한 논문을 선발하여 참여대학원생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액 및 선발대상자 수는 당해연 도 예산에 따라 연구단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국내여비는 원내 ‘여비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 및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의비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부칙(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운영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